

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기관·단체명	대표자 성명	
	전화번호/Fax	전자우편	
	주소		

업무의 범위 (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)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15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19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산림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의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(법인인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의2제3호에 따른 금액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